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2020. 10. 22.(목) 14:00~15:30
- | 장소 | 부산인권교육센터
-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일시: 2020.10.22.(목)14:00~15:30
- 장소: 부산인권교육센터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시 간	내 용
14:00~14:05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주제 :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14:05~14:20 (15분)	<b>[토론 1]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b> - 박용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감염병을 중심으로
14:20~14:35 (15분)	<b>[토론 2] 한국에 사는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b> - 송정문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화재 및 지진을 중심으로
14:35~14:50 (15분)	<b>[토론 3]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개선방안</b> - 주우민 (울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태풍/홍수 중심으로
14:50~15:20 (3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30	폐 회



- [토론 1]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 1  
 박용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토론 2] 한국에 사는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  
 화재 및 지진을 중심으로 ..... 23  
 송정문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토론 3]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개선방안: 태풍/홍수 ..... 43  
 주우민 (울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부 록 ..... 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9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 1]

##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박용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1.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난,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의 취약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

- ◎ 2020.01.20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청도대남병원에서 집단 사망. 이후, 신장장애인 대책 부재를 비롯하여, 장애인 자가 격리자 지원 부재 사건, 장애인거주시설 집단발병에 따른 코호트 조치, 시청각장애인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미흡,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 시설 폐쇄에 따른 돌봄 및 지원 체계 부재 상황이 제기되었음.
- ◎ 실제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2월 20일 첫 사망자 이후, 다음 날 같은 층 15명이 확진 되었으며, 이틀 후에는 256명(종사자와 환자) 중, 무려 11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결국 22일 코호트 격리하였음. 이후, 매일 사망자가 나왔으나, 정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환자들 이송하지 않음. 문제가 지속되자, 24일부터 병실 확보를 위해 환자들 일부 이동.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요청을 하는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 이송 요구.
- ◎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도 면역력 취약해 감염 위험성도 높으며, 감염 시 생명의 위태로움이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특히, 신장 투석을 받는 장애인 중, 열이 있는 사람의 경우, 투석병원에서 투석을 거부하여 체내 요독이 쌓여 위험한 상황(경북 영주)이 생기기도 하고,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신장투석병원으로 이용하는 100여명의 신장장애인이 복지콜 배차를 거부하여 차량 이용의 어려움과 감염의 두려움을 안고 신장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 ◎ 장애인 자가 격리자에 대한 대책도 부재했는데, 서울 종로 명륜교회 예배 참석했던 중증장애여성은 확진자가 종로 명륜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 검사 희망했지만 증상이 없었기에 검사가 불가하여, 중개기관의 자발적 조치로 자가 격리 후, 해제함. 그리고,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의 확진 이후, 장애인 13명, 활동지원사 16명, 센터 직원 등이 자가격리했는데, 활동지원사 부재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음. 또한, 자립주택 거주자인 발달장애인이 발열증상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했으나, 일반병원 진료 권유받음. 그러나 병원에서는 진료거부하였고 보건소에 재차 요청하여 선별진료팀이 방문하여 검사 실시하였고, 확진판정 받음. 대구지역 단체 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지원하였음.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집단 발병도 있었는데, 칠곡 밀알사랑의 집을 비롯하여 경북 예천 극락마을, 대구 성보재활원 등 적지 않은 숫자의 장애인과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등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설 내, 외 출입 통제 조치를 취하여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이 실제적으로는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일상 생활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취약 계층 생활시설 거주인에 대한 예방적 보호조치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조치 실시 발표 (2020.03.07.)
- ◎ 청각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 제공 미흡도 제기되었는데, 장애인 인권 단체 등에서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각 방송사 등에 수어통역 시청권 및 알 권리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며, 정부는 1339 문자와 음성 상담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카톡 상담을 실시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 지역사회 전파가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조치 (02.28)를 실시했는데, 돌봄교실 등도 폐쇄됨으로서 장애자녀 돌봄을 오롯이 부모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음. 실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 협회가 발달장애자녀를 둔 1,58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정 내 돌봄 상황이 지속되자, 발달장애자녀들의 도전적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했음.

- ◎ 이런 현실을 토대로, 정부는 지난 2020 6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 특수성 및 이를 토대로 한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배부함.

## 2.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 특수성 (보건복지부, 2020)

-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 특수성은 ‘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 다섯 가지로 구분됨.
  - 가) 의사소통제약 :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에 정보 습득과 이해부족 발생
    - ◎ 시각·청각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등
  - 나) 이동제약 :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의 도움 필요
  - 다) 감염취약 :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장애상태가 고착되어, 기저질환 보유, 혈액 투석, 재활 등 정기적 치료 및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 내부기관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 ◎ 만성기저질환 : 당뇨, 만성 내부 기관 질환자, 항암 치료 암환자, HIV 환자,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 및 입원 환자 등
  - 라) 밀접 돌봄 : 가족, 보조인 등 돌봄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고, 대면 활동 제약 등으로 돌봄 단절 시, 일상생활 곤란
    - ◎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비스가 단절될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 등 일상기본생활에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가 해당함.

마) 집단활동 : 장애인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집단 생활, 각종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통한 단체 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지님

〈장애유형별 재난(감염병)에 대한 주요 취약성 요약〉

장애유형	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
지체					
시각	시각정보				
뇌병변					
청각	음성의사소통				
발달	의미의사소통				
내부기관장애					

### 3.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 지원 고려 사항 및 내용 (보건복지부, 2020)

- 감염병 상황에서 제시된 장애 특수성 다섯 가지와 관련하여 아래 다섯 가지 방향을 토대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함.
  - 의사소통제약 ⇒ 정보접근성 강화
  - 이동제약 ⇒ 이동서비스지원
  - 감염취약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의료지원
  - 밀접돌봄 ⇒ 돌봄공백 방지
  - 집단활동 ⇒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제공

#### (1) 감염병 정보 접근성 강화

- \* 청각장애인 : 뉴스, 감염병 브리핑 등 정보전달 과정에 수어통역 서비스 및 화면해설 지원, 자막 의무화 및 영상 수어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편의 제공
- \* 시각장애인 : 감염병 관련 인쇄물 배포 시, 문자 인식 가능하도록 음성변화출력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QR코드 또는 보이스아이 포함한 인쇄)

- \* 발달(뇌병변)장애인 : 언어 관계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적은 양의 글로 표현하는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그림 판 등 활용)
  - 공통 : 시, 도내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을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예약 등) 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관련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내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시스템 구축

## (2) 이동서비스 지원

-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 이동 제약으로 인해 별도 지원이 필요
- \* 휠체어 이용 및 와상장애인 : 자력 이동 불가능함으로 조력 지원이 별도로 필요
- \* 신장장애인 : 감염 시, 사망률이 높음으로 투석 위한 병원 이동 지원 필요
  - 공통 : 유증상장 이송을 위한 특장차 방역처리 및 운전자 등 체계 마련. 이동 제약에 따른 생활 지원을 비롯한 시, 도내 휠체어 이동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을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 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 \* 고위험군인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확진 시 병원 격리 등 우선 조치, 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 생활지원 병동, 병원 확충. 가족 동시 확진 시 가능한 같은 병원 및 센터 입원, 입소. 특히 신장장애인은 코로나 19 확진 시, 혈액 투석가능 병상 및 의료지원 연계 필요

## (4) 돌봄 공백 방지

- \*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일상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 활동지원 : 장애인당사자 또는 돌봄제공자 격리상황에서도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 돌봄지원 : 가족돌봄, 긴급돌봄 등 장애인시설 이용중단(일시폐쇄), 보호자 부재 등의 상황에서 돌봄 공백 대응. 돌봄제공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 밀접지원

방법 교육 후 투입

- 생활지원 :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방안 마련, 시행

###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 필수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관서비스 연계, 긴급돌봄서비스 인력투입,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 장애인 생활시설 대상 예방적 격리 실시 및 감염으로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 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지역 대응체계 마련. 임시시설은 1인 1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 환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 4. 좀 더, 인권적인 대응 방안은?

### 4-1. WHO 기준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행동수칙	정부 지원 대책
1)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감소 2) 단절없는 장애인 돌봄과 지원 계획 수립 3) 코로나19 확진시 대비 4) 가족과 보조인들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1) 장애인 공공보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2) 장애인과 그 지지체계 선별적 조치 시행 3)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선별적 조치 시행 4) 고위험 장애인의 지원체계 마련 5) 장애인 응급지원체계 마련
보건의료종사자 행동수칙	서비스제공기관 행동수칙
1)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접근성, 경제성, 포괄성 보장 2)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의료 제공	1) 인력 감소 상황 대비 계획 수립 2) 장애인과 장애인 지지체계와 자주 소통 3) 장애인 서비스 제공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최소화 4) 복합적 요구사항을 가진 장애인에 충분한 지지 제공
기관 설정에 대한 조치	지역사회를 위한 수칙
1) 코로나19에 대한 노출 감소 2) 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 3)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 제공 4) 코로나19 발생 시 거주 권리 보장	1) 주민이 지켜야할 기본 보호 대책 2) 기관의 유연한 작업 준비 및 감염관리 조치 3) 취약계층을 위해 상점에 대한 접근성 향상 4) 장애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연계

## 4-2. 유럽장애포럼이 제안한, 코로나19의 장애 포괄 대책 (비마이너, 2020, 4)

- ◎ 공중보건 관련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
  - 모든 정보를 쉬운 단어로 써서 읽기 쉽게 할 것
  - 온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자동 전화 서비스 구축, 비디오, 전단지 제작 등)
  -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
  - 쉬운 언어와 읽기 쉬운 형태로 쓰인 정보
  - 모두가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
  -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전화번호나 이외 모든 채널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포함하여 응급번호(119나 현재 코로나19 관련 전화번호)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요구에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시·청각장애인은 현재의 전 세계적 전염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격리 조치들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쉬운 글과 수어 통역이 큰 사이즈로 적혀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구석에 작게 이미지를 두거나 원도우창을 작게 만드는 것은 피한다).
  
- ◎ 차별 없는(Non-discriminatory) 윤리적 의료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
  - 의료기기의 부족, 보건의료 부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의료전문진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의료 가이드라인은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재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치료를 위한 국제법과 기존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 차별 없는 윤리적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반드시 UN의 장애인권리협약, 그중에서도 특히 11항인 '위험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 대한 서약을 참작해야 한다.

- 산마리노공화국 생명윤리 위원회(the Bioethics Committee of the San Marino Republic)의 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침 : 치료대상자뿐 아니라 인계할 치료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자원의 할당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부상 정도에 따라 환자의 분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기본 윤리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선택의 유일한 매개 변수는 치료의 적합성과 과잉조치 금지 기준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에서 환자 분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이, 젠더, 사회적 혹은 민족적 소속, 장애와 같은 우선순위 선택 기준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들은 곧 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모독, 즉 ‘어떠한 삶이 치료받기에 더욱 혹은 덜 가치 있는가’를 명백히 드러내는 삶의 순위를 구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위생적인 의료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것

- 격리 제공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의 경우, 완전한 정보 접근성을 포함하여 장애인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응급상황 및 건강 관리 차원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수어통역사, 개인 활동지원사 및 기타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를 다루는 다른 의료종사자들과 동일한 보건 및 안전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진들은 사전 병력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면할 때의 위험에 대하여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지침에는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장애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주요 의료진이 장애 관련 지침에 대해 신속하게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이 위기 대응에서 뒤처지거나 위기 대응 체계에서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보건시설의 모든 출입구(‘제2출입구’로도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포함됨)는 서비스의 다른 모든 부분과 동일한 위생 규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사로나 계단의 난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손잡이나 장치, 문 자동 여닫음 버튼을 청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살균제나 여타 위생용품은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위생용품들은 접근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이 위생용품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접근 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위생용품들을 분배하는 방식을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아래 EU)은 개인 보호 키트가 부족한 국가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장비는 의료진들이나 사회복지사, 법 집행 공무원과 같은 최전방 직원들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시스템이 수준 이하인 별도의 시설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서비스와 지원 공급에 투자할 것 : 필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연대가 필요하다

- 의료와 사회적 돌봄시스템은 EU 전역에 걸쳐 계속해서 자금 부족을 겪어왔다.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의약품, 보호제, 노동자의 초과근무 수당처럼 현재 위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및 연계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여타 점차 늘어나는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시에 긴급하게 요청된다.
- EU는 현재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돕기 위하여 추가로 긴급재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활동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

- 정부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 그 구체적인 요건과 가정 적절한 해결책을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 모든 코로나19의 억제 및 완화 활동(장애 포괄 대책에 직접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은 반드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상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인구 전반에 대한 대책과 정책 발의에도 적용된다.



◎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필수 물품, 지원 및 인적 연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 격리 기간에 집에 감금되어 특정한 어려움을 겪을 때,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집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 격리 또는 기타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강제 격리, 강제 억제, 강제 약물 투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호흡기 혹은 기타 건강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되기 쉬운 장애인 그룹에 대해 사전 예방 테스트 및 더욱 엄격한 예방 조치를 도입한다. 이 예방 조치들은 해당 장애인 그룹의 지원 네트워크로 확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병 단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를 초과하는 격리 지침을 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를 제도화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동 및 정신장애시설의 인구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는 설정이기도 하다.
- 만약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시설이 폐쇄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엄격한 위생 및 예방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간병시설의 모든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여 시설의 직원 부족과 부재로 거주인들이 버려지거나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 거주자는 직원 부족이나 부재의 경우, 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에 관해 시설 거주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이동과 사업에 제약을 두는 것이 이동성이 낮은 사람(고령층을 포함하여)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가중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 예로 장애인과 고령층에 한정한 가게 개방시간 혹은

우선 제공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돌봄시설의 방문이 금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경우, 현 사태 이전부터 이미 사회에서 고립되어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격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이 될 수 있다. 지원, 음식, 필수 서비스 없이 누구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 입안자는 아무도 홀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U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처럼 특히 취약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현 사태의 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다른 그룹에 비해 가지고 있는 더 큰 취약성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자와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소통하고,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개인보호나 간병돌봄, 그 외 장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식품이나 위생용품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이 배제당하지 않고 필수 물품과 기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는 장애여성이 포함되고 또 접근 가능해야 하며, 역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젠더적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학대받는 장애인을 식별하고 구조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보조 장치를 지원할 것

- 유럽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장애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장애인이 질병 또는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지원 네트워크(개인 활동

지원사, 가족 및 특정 전문 서비스 포함)에서 일시적으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금 및 실용적인 해결책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장애인지원서비스 제공자(치료진, 지원 인력과 개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하여)를 현 상황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핵심 노동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며, 일할 시 감염의 노출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이 직장(장애인단체 또는 고객의 집 모두를)을 오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 시·청각장애인의 통역사와 개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하여 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을 포함)과 조력자, 서비스 지원 직원들에게 개인보호키트를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개인보조나 간병돌봄, 그 외 장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간병인의 수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기관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간병인에 대한 신원조회\*처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한 보호 조치는 유지하되 여타 관료적 고용 절차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 의약품, 보호제,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처럼 현재 위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및 연계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해야 한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부서가 위생용품을 확보하였는지, 엄격한 위생 및 예방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생용품 공급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설 관계자는 시설 거주자가 위생용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 이와 유사하게 필수 보조장치의 제공 및 수리에 관련된 서비스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 시·청각장애인 통역사와 지원 담당자는 자주 시·청각장애인과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물리적 보호장비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 사회적 격리 조치 하에서도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자와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소통하고,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기에 따른 격리 조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대와 더불어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 ◎ 수입을 보장할 것

- 정부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부양책 내에서) 재정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자격에 맞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임금 일괄지불, 세금 감면 조치, 물품 보조금 지급 혹은 특정 비용의 지급에 대한 관용 등이 포함되며 그 외 관련 조치들 역시 포함된다.
- 정부는 장애인과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직무의 성격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집에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직원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특별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 원격 근무 또는 교육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직원/학생에게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정부, 장애인단체 및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직원/학생과 긴밀히 상의하여 수어 통역, 실시간 자막, 원격 근무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응 작업 및 기타 조치를 이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 기저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은 평균보다 더 오래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장애인 단체 및 교육 기관은 장애인이 이러한 장기화된 국면에서도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 많은 국가에서는 현 사태로 인해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주간돌봄시설과 탁아소 같은 기관들이 문 닫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사람들이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적정 수준의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 공중보건 소통과 관련된 메시지는 모두를 존중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사전 병력이 있거나 노년층, 복합적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해당 그룹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나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특정 인구군에 가해질 잠재적 차별을 피해야 한다.
  - 공중보건 문자는 격리시설(정신질환 시설을 포함하여)에 있는 장애인에게도 전달이 가능한 포맷을 보장해야 한다.
  -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특정 그룹을 낙인찍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 ◎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의 권리를 보장할 것
  - 인구 그룹별로 차별화된 감염률, 이용 가능한 인도주의적 원조에 접근할 때 여성이 직면하는 장벽,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발생률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때, 성별과 장애를 구분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들이 현재의 전 세계적 전염병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및 요구를 상담할 때, 장애여성단체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대책에 젠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대응 대책은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의 특정한 요구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각각의 특정 장애인 집단 내에서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요구 역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 장애여성이 현 상황과 관련한 모든 장애인 대응 단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모든 필수 분야(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제공업, 상점, 농업, 위생, 식품 생산업을 포함하여)에서 일하는 장애여성들이 잠재적 감염에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 접근, 개인 보호 장비 및 위생 제품(생리대 포함)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지역 장애여성단체나 커뮤니티 기반 장애여성그룹이 전염병 관련 예방 전략과 대응 대책에 접근 가능한 메시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여성을 위한 산전 및 산후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여성이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전염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여러 비공식 부문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간병인, 가사도우미, 이주여성 등)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 가정 내 환자의 건강 관리 및 장애인 돌봄이 대부분 여성과 장애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수행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줄이고,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를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적 상황에서 대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이러한 대책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도입한다(긴급 직통 전화 서비스, 대피소 등).
- ◎ 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의료정보 시스템과 모니터링에 집계될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 정보 시스템과 모니터링,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파를 모니터링하고 막는 데 쓰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나이와 성, 그리고 장애가 분석되어야 한다.
- ◎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보장할 것
- EU는 현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차별도 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나가면서

- 코로나19로 마주했던 장애인의 구체적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개선한다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 그리고 WHO의 가이드와 유럽장애포럼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 포괄 대책을 견뎌보았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정말 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이것이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차분히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시 코로나19 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은 이번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

## ※ 인용 및 참고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문, 2020,

비마이너,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 포괄 대책, 2020, 4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2020

소셜 포커스, 코로나 19 발생 80일, 발달장애인 그 가족의 삶은? 2020, 4

이한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78호, 20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 장애인 관련 정부 대책, 20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코로나19 도미노처럼 무너진 장애인의 삶, 20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재난상황 긴급점검 온라인 간담회, 2020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 2]

## 한국에 사는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 화재 및 지진을 중심으로

송정문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1. 들어가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이라면 화재를 들 수 있다. 올해만 해도 다수가 주거하거나 이용하는 건물에서의 대형화재는 두 건이나 있었는데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전남 고흥의 병원 화재였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3명이 사망하고, 1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2018년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이 발생하였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사망자 29명이, 2015년 의정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125명이, 2019년 김포 한 병원 화재로 사망자 2명, 부상자 47명이 등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는 산불로 인해 4,011세대가 일시대피하는 등 재난이 선포되기도 했다. 이 중에서 밀양병원 내 발생한 화재는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부상자가 컸던 화재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행정안전부, 2017.09.24).

지진은 어떠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인한 일본 인구의 사망률은 0.8% 였는데 당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3.5%로서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진은 장애인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재난 중 하나임이 드러났다(정태호·윤누리·박덕근, 2019). 그러나 2016년 이전까지는 그나마 한국이 지진에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어 지진에 대한 대책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동안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이상의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당시 경북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경남지역에서도 다수가 지진을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지진에 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도쿄만을 중심으로 ‘생선 썩는 냄새’와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1923년 관동대지진,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와 같은 대지진의 전조증상이기도 하여 인근 국가인 일본은 다가올 대지진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고현승, 2020월 10월 8일 기사)

이처럼 화재와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재와 지진 발생 시에 필요한 안전대책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수준일까. 그리고 누가 어떻게 마련하여야 하는 것일까. 지진 사태 이후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얼마나 강화되었을까. 이러한 물음을 토대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지진 등의 재난에 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의 수준

우리나라는 2018년에 들어서서야 「재난안전법」에서 장애인을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이에 관한 안전종합대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 이후인 2017년 9월, 정부에서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 셋째,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행정안전부, 2017)

분야	정책계획	추진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① 정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li> <li>▶ 재해연보, 국가화재통계에 장애 유형, 수준 반영</li> <li>▶ 지자체 장애인 안전관리 정책 평가지표 마련</li> </ul>	2017~2019
	②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포함</li> <li>▶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장애인 행동매뉴얼 제작·보급</li> <li>▶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홍보</li> </ul>	2017~2021
	③ 응급안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등록단계부터 U-119 ‘안심콜’ 홍보 강화</li> <li>▶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활성화</li> </ul>	
	④ 재난구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시설 위치 홍보</li> <li>▶ 장애인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 강화방안 마련</li> </ul>	
	⑤ 재난경보·대피 전달 기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 장애인 재난 정보전달 및 이동·대피 지원시스템 설계 및 개발</li> <li>▶ 지역기반 장애인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li> </ul>	2019~2021

분야	정책계획		추진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	① 안전한 생활환경 (Barrier Free)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범사업 및 BF 상세표준도 보급	2017~2019
	② 안전인프라 확충	▶ 「30구역」지장관리, 점멸 피난구 유도등 설치 의무화 ▶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설치의무화, 면적·문폭 확대	2017~2021
	③ 안전한 주거환경	▶ 주택용 소방시설 및 가정 내 가스 안전장치 보급 ▶ 실내환경 진단·개선 지원	
	④ 복지·교육시설 안전	▶ 노후 학교 내진보강 및 특수학교 안전관리 개선 ▶ 복지시설 전문가(시설, 가스, 전기) 합동 안전진단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	① 안전 교육	▶ 장애인·보호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국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 프로그램 마련	2017~2021
	② 재난대응훈련	▶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현장 대피훈련 실시 ▶ 특수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시범실시 후 확대	
	③ 장애인식 개선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및 교육	
	④ 종사자 및 구조자 역량강화	▶ 복지시설 종사자 재난 안전교육 훈련 강화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강화 ▶ 경찰, 소방공무원 장애특성 교육 실시	
	⑤ 장애인근로자 안전	▶ 사업장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화재 사고 시 공영방송 3사의 수어통역의 뉴스 특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피장소나 안내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차별로 진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장애인 재난안전의 현실이 너무나 파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조차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김정은·김경화·조태홍, 2019).

이처럼 ‘재난방송에서의 수어통역 의무’라는 주요한 내용이 장애인 안전대책에서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2층 이상에 거주하거나 2층 이상의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대신 이용할 피난기구의 마련’도 제외되었다.

게다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0년 10월 현재까지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피 지원 시스템 개발조차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법령 또한 교육이나 안내와 관련한 매뉴얼 마련 정도의 수준에서 개정되었다(반기용, 2020년 6월 28일 기사).

그렇다면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령에서 장애인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는 현재 무엇이 있을까. 관련 법령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장애인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령과 그 내용

법령	장애인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규정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⑨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진대책법		없음
재해구호법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없음
초고층재난관리법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진대책법」 및 「재해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장애인 안전대책에 관한 그 어떤 언급조차 없다. 무엇보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은 대피가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보장기구나 대피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그 어떤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장애인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소방시설법 제9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설비와 피난설비(유도등)’가 유일하다(〈표 3〉 참조). 이마저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 의원, 산후조리원은 의무설치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운동시설, 휴게소는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대피소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점자블록 등이 제외되어 있다(〈표 4〉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에는 경보설비와 유도등 외에도 피난 구조설비 중 피난기구로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이 있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를 이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상 피난기구에 관한 편의시설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표 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종류	대상시설	대피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	의무여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유도등, 경보설비)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300㎡이상) 안마시술소,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500㎡이상) 의료시설(병원) 판매시설(1000㎡이상)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기숙사, 장례식장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중화장실 의원, 산후조리원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권장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운동시설, 휴게소	없음	해당 없음

〈표 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피소에 관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종류	의무 설치 편의시설	권장 설치 편의시설	비대상 편의시설
대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접근로</li> <li>▶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li> <li>▶ 출입구(문) 폭 등의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도 및 안내설비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안내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li> <li>▶ 점자블록</li> </ul>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보면, 재난 시 장애인의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련 통계 미비, 안전설비 설치 미흡,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세 가지 정책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둘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셋째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으로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2017)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나마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교육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조금은 보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난에 관한 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추진이나 대피소의 편의시설 보장, 무엇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기구에 관한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내 장애인 재난·안전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4-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계획

구분	정책계획	시행시기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등 법 제도 정비	2018~2019년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통계 구축	2018년
	▶ 지자체 대상 재난관리평가에 장애인 안전관리 평가지표 보완	2018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 화재발생 시 점멸·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 의무화	2018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	2018년
	▶ 장애인 화장실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벨 설치(바닥에서 0.6~0.9m사이 및 바닥에서 0.2m 내외(쓰러진 상황에 대비))를 의무화	2018년
	▶ 영화관, 공연장 등의 관람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토록 의무화	2018년

구분	정책계획	시행시기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6대 안전분야의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콘텐츠(커리큘럼, 학습교재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 보급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3. 재난 발생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욕구

2013년 UN 조사 결과에서 126개국 5,000명 이상의 장애인 가운데 약 20%만이 갑작스러운 재난안전 상황에서 어려움 없이 즉시 대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은 재난안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이라 할 수 있다(김정은·김경화·조태홍, 2019).

강신욱 외(2014)는 재난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oodong Kim 외, 2017).

- ① 예컨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진 경우, 이웃과의 교류가 드문 경우, 외국인, 관광객 등 고유의 지리, 재난정보에 대한 이해력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정보의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특성이 있다.
- ② 재해의 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한 근력이나 순발력이 부족한 경우,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장애로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위험회피·피난행동의 어려움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 ③ 단전, 단수, 연료부족 등 위생 및 생활문제의 발생, 특별한 보조기구, 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소 시설 등으로 건강생활이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뚜렷한 특징이다.
- ④ 대피소 내 공간적, 물질적, 인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 존재, 이재민 간 이해관계의 충돌, 외국인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공동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대피소나 피난처의 환경적응이 곤란한 특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재난발생시 신체적인 활동제한으로 대응이 불가능

하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oodong Kim 외, 2017).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부로부터 보장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안전장비의 제공이 1순위였고,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건축물 및 지역에 대한 개·보수, 의사소통 및 정보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기와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류현숙, 2018).

이러한 특성이나 욕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재난 안전대책은 훈련과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4. 장애인의 안전대책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 11조를 살펴보면, ‘당사국’은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 협약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명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국제법도 기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 의하여(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2008년 12월에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이미 2009년 1월부터 국내에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미국의 경우<sup>1)</sup>, 「포스트-카트리나법(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제6장은 국가비상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비상관리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제648조)을 포함하여 포괄적 평가체계(제649조), 개선조치관리프로그램(제650조)에서 특수요구가 필요한 장애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재난 시 주거시설 공급을 계획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

1) 미국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에 관한 내용은 정태호·윤누리·박덕근(2019)이 저술한 “장애인 재난안전 관계 법령 개선 연구”에서 발췌.

장애인에게 충분한 수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제683조), 임시주거시설과 구급소, 급식소, 이동식 화장실 등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도록 되어있다(제699조).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비상 관리를 위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 내에 ‘장애 코디네이터(disability coordinator)’를 두도록 하고 있다.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서는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구호 및 원조 활동을 보장하고(제308조), 대규모 재해 연방지원 중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주택은 신체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8조).

또한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은 유무선 통신의 국·내외 사용규정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통신서비스(제225조), 장애인의 접근(제255조), 상호연결성을 위한 조정(제256조) 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장애인이 긴급 사태 시 비상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정태호·윤누리·박덕근, 2019).

물론 미국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에도 문제점은 많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재난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찾아보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재난대응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해당 안내서에는 장애인 자신과 장애인 대피를 도울 지원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훈련을 제공하는 자 혹은 장애인 대피를 도울 지원자를 위한 안내서로 보인다.

한 예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를 살펴보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대응매뉴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관련 안내서에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어려운 글로만 적혀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쉬운 글이나 그림조차 없다. 즉, 안내서는 그저 지원자의 장애인 대피훈련용으로 만들어진 안내서일 뿐이다. 결국 지원자에 의한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대피상황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한다면 발달장애인은 이 안내서를 통해 스스로 도움 받을 방법은 매우 희박하다.

이 외에도 ‘지체·뇌병변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안내 되어 있다.

〈표 6〉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및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p>지진발생 시                  : 대피 시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동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곳을 선정하여 대피한다                  (단,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음).                  ※ 자력대피가 가능한 경우 :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 이용 가능한 보조기구(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등)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 수평이동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 가장 빠른 시간 내 자신의 의지로 몸을 끌거나 기어서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한다.                  ※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지원자와 함께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 대피 경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p>
---

경사로를 따라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면, 1층이 아닌 이상 대피경로에는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자력대피가 불가능하므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지원자를 통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결국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지원자가 없는 상태의 자기 거주지 내 재난이 발생한다면, 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음을 안내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안내서는 그 동안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마련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매우 급하게, 제대로 된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안내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분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의 재난대응에 관한 안내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 5. 장애인의 재난(화재 및 지진) 안전대책에 관한 제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에 따라, 다음 일곱 가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제 활용가능 한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재난 시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각종 경보설비, 피난기구 및 유도등을 포함한 피난 구조설비에 관하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법 상에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의무설치시설을 정하고, 소방안전법에서 이를 의무관리하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나 학교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내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시설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기구(예. 장애인용 완강기 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설비, 유도등의 의무설치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운동시설, 휴게소 또한 의무설치 시설로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기구(예. 장애인용 완강기 등)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 발생 시의 관련 재난방송에서는 반드시 수어통역이나 자막방송을 하도록 방송법 및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안전부 산하 및 지자체 관련 부서 내에 장애인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장애인 비상대피지원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공공주택 관리소장 및 직원들도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하거나 관리소 내에 장애인 안전지원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발간 및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국의 대피소에 대하여 장애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피 지원 시스템은 장애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제9항 제4호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등의 재난대피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현승. (2020년. 10. 09). “도쿄 앞바다 생선 썩는 냄새... 대지진 전조?”. <MBC 뉴스 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 검색일 2020년 10월 8일.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그 밖의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그 밖의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시각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시각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지적·자폐성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지체·뇌병변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 김정은·김경화·조태홍. (2019). 장애인의 재난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탐색. 인문사회21. 10(5). 1727-1739.
- 류현숙. (2018).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반기웅. (2020. 06. 28). “포항 지진, 재난의 여진은 계속된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20년 10월 8일.
- 정태호·윤누리·박덕근. (2019). 장애인 재난안전 관계 법령 개선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34(1). 98-107.
- 행정안전부, (2017. 09. 24).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보도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02>>. 검색일 2017년 10월 2일.
- Soodong Kim, Sahong Lee, Kilhyun Choi, Chongsoo Cheung. (2017). 재난 취약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대상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3(2). 155-162.

## (정책 및 법령)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018).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검색일 2018년. 12월. 1일.
- UN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 (2009.1.9., 제19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자연재해대책법. (2020. 8. 11, 법률 제174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재해구호법. (2020. 1. 29, 법률 제168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2018. 3. 27, 법률 제155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19. 11. 26, 법률 제165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 3]

##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개선방안: 태풍/홍수

주우민

(울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1.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의 필요 배경

최근 인간의 무리한 자연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점점 심각해져 강한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커지고 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는 시간당 120mm이상 강수량으로 울산 태화강 범람,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일 등 부산 울산지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김과 동시에 경남 영남 전역에 아주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원(복구 비용)이 투입 되었으며 피해 곳곳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 큰 피해 이후 또 다른 재해에 예방하고자 준비하였지만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9호)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또 다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경험을 토대로 피해에 많은 대비를 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늘 미비하여 더 강력해진 재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를 받고 있다.

울산의 경우 태풍 마이삭(9호)으로 인한 정전 및 시설물 피해 등으로 인해 오전 2시부터 약 3,570가구가 정전이 되었고 울산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도 1~2시간 동안 정전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으며, 동시 다발적인 정전으로 인해 즉각적인 복구가 어려워 주민들은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소리와 함께 정전으로 인한 공포를 같이 느껴야 했다. 또한 정전과 누전 파손 등으로 울산 전역 교통신호등이 51개가 꺼졌지만 상당수가 출근 시간 때에 복구되지 못했으며 가정의 전기 역시 하루가 지나 복구가 된 곳도 있었다. 마이삭(9호)이 지나간 지 5일 만에 다시 하이선(10호) 북상하면서 얼마 전 느꼈던 공포를 다시 마주하여야 했으며 그 공포는 이로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누구나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피해 발생 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장애인은 확실적인 지원 및 대책으로 재난에 의한 고통과 더불어 인권침해에 따른 고통으로 말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는 한다.

이에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누구나 도움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 2. 재난 상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배려

시각 장애인은 시각에 의한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어렵다. 이에 음성 정보 전달 등의 정보 전달 방법의 배려가 필요하며 피난지원 및 피난소의 배리어프리 확보 및 안내견에 관한 배려도 요구된다.

청각 장애인, 음성 및 언어장애인 등은 음성에 의한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음성 언어로 상황을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에 의한 정보 전달 등과 같은 정보 전달 방법의 배려가 필요하다.

시각 및 청각 복합 장애인 등은 복합적인 장애로 인한 정보 수집, 상황 판단이 상당히 어려우며, 단독으로 신속한 피난 행동이 힘들다. 이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 전달 방법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신체장애인은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난 시에는 휠체어 등의 보장구와 피난지원자가 필요하다.

신체내부 장애인, 난병환자 등은 특정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이 필요하나 외견으로는 장애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난소에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의 정보를 수집, 확보가 필요하며 의료 기관과 연계, 이송 수단의 확보, 피난 지원자가 요구된다.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여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며,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장애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에 가족 및 지원자에 배려 사항을 물어봐야 한다. 또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배려 및 냄새, 소리, 빛 등에 민감할 경우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난소에서 개별적인 공간 및 복약 관리가 요구되며 화장실, 식사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양하며,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집단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지적 장애인 수준의 배려가 요구된다.

정신 장애인은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약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피난 지원 및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복약관리 등 의료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난 시 재난 약자 지원방안. 2017.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 3. 필요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여러 재난 상황 중 화재와 지진처럼 예측불가 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풍, 홍수와 같이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예측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산사태 등의 2차적인 사고의 발생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재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 하려고 노력하지만 100% 재난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화되는 재난 정보를 습득하거나 위험 상황 시 대피처로 이동을 하는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준비하고자 하나, 정부 및 지자체 단체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법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 시 이동지원, 대피처의 분리 공간 등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한 매뉴얼로 인해 맞지 않는 실제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대피방법이 대부분이다.

가족 구성원 중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의료적인 장비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큰 공포가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난에 따른 정보를 습득하거나 도움을 청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하여 혼자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 재난 상황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구축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 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재난상황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여 대처 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인 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서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탈 시설화로 인해 지역 내 독립

하여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의 경우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신체장애인에게는 이동 시 및 대피처에 필요 보장구 제공과 함께 정보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획일적인 방법으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로인해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읍·면·동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인 실 거주 확인 및 장애유형 별 정보제공 방법을 미리 숙지·전달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나. 장애인 1인 가구의 주민 관계망 형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전달 방법을 구축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웃 주민 관계망을 형성하여 위급 상황 시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등장하며 시대흐름 및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피를 해야 할 경우 발달장애로 인해 판단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낮은 대피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가까운 이웃 주민과 사전에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체장애로 인해 홀로 위험지역을 빠져나갈 수 없는 장애인 역시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어떠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지, 신체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실제 위급상황 시 주민의 도움으로 위험지역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및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장애 유형에 맞는 대피 경로 확보 및 대피소의 환경 개선

재난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은 자연을 통제 할 수 없으므로 늘 재난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긴급히 대피를 해야 할 경우 언덕, 계단 등 보장구 사용이 어려운 경로가 발생하고 발달장애로 인해 낮은 곳에서 도전적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피난처에 가기를 거부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누구나 재난 시 피난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막상 장애로 인해 높은 벽에 부딪치기도 한다. 이에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대피경로를 사전에 점검해야하고 대피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유형에 맞게, 안정감 있는 형태의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수어통역사 및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배치하여 긴급 상황 시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나 의료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수 의료진을 배치하고 장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라. 재난 발생 시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사례조사 및 피해실태조사 진행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颱風)·홍수(洪水)·호우(豪雨)·폭풍(暴風)·폭설(暴雪)·가뭄·지진(地震)·황사(黃砂)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역중,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이처럼 재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완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연은 사람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긴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 하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피해 발생 시 일반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파악 하여 획일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집계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장애유형별, 정도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대피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데이터를 기반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화재 사고 시 공영방송 3사의 수어통역의 뉴스 특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피장소나 안내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아(Beminor, 2019.8.10.검색) 파편적이고 대책 없는 장애인 재난안전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장애인의 재난 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탐색, 2019, 김정은, 김경화, 조태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미세먼지 등과 같은 사회재난 위기가 가중되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은 대표적인 재난안전 취약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송호준, 2018; 이연희, 2014; 이정수 외, 2018; 이주호, 2015; Parr, 1987; UNISDR, 2015)(장애인의 재난 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탐색, 2019, 김정은, 김경화, 조태홍). 왜냐하면, 장애인은 재난안전 상황 시 자신의 의지나 욕구에 따라 대피나 대응, 복구 등의 노력에 있어 통제의 취약성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적일 가능성이 더 크고, 이러한 대처능력의 어려움은 곧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권효순 외, 2013; 이주호, 2015; Hans & Asha, 2013)(장애인의 재난 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탐색, 2019, 김정은, 김경화, 조태홍).

이처럼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재난안전 취약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부분 마저 침해를 받고 있어 이것에 대한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에 아동, 노인, 기저질환자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들을 거쳐 지역현실 및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명 많은 시간과 경비소요 등이 발생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지역 내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모두가 재난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라본다.

## 참고문헌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 약자 지원방안  
인문사회21, 제10권5호 (장애인의 재난 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탐색, 2019, 김정은,  
김경화, 조태홍)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 부 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740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 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

-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 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 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3조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④「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 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⑤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제목개정 2010. 5. 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 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 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 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1674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

##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

| 인 쇄 | 2020년 10월

| 발 행 | 2020년 10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18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